

EU 2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규정) EU위원회, 식수 관련 법률 개정

*출처 : 유럽위원회(2018.2.1.)

○ 식수 품질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2017년 11월 17일 구텐베르크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기본원칙 중 하나임

○ 2월 1일 입법 발의된 사안은 양질의 식수 공급 보장과 접근성 향상에 관하며 식수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럽시민운동 'Right2Water'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임

- 최소 백만 명의 시민들은 유럽위원회에 입법안을 제안, 요청할 수 있음
- 2013년 12월 '물과 위생은 인권입니다!' '물은 공공자산이지 상품이 아닙니다!' 를 취지로 한 제안서를 제출, 160만 건이 넘는 지지 서명 받음
- UN의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구현,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써 물과 위생환경 제공 촉진하는 법안 촉구
- 2014년 2월 유럽의회에서 청문회 개최 이후 일련의 후속조치 시행

○ 식수 지침 개정안

- 물 안전성에 대한 기준 개선.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최신 과학지식에 따른 업데이트로 수돗물이 EU 전역에서 식용수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
- 장기적인 수질 안전성 평가 제공,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확인 가능
-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돗물의 소비 증가 위해 접근성 개선 의무, 플라스틱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가능. 안전한 식수 공급에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식수 접근성 개선, 보장 의무
- 식수 서비스 투명성 제고, 온라인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. 현 지역에서 수도 서비스를 이용여부와 마그네슘과 칼슘 등 수돗물 내 영양소 정보를 알 수 있음

○ 식수 관련 개정지침은 2018년 1월 16일에 발표된 EU플라스틱사용 감소 정책

을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입법이기도 함

○ 유럽위원회는 WHO협력 하에 기존 법안을 분석하고 안전한 식수를 규정하는 18개 기준 목록을 개정함

– 병원균 및 바이러스:

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라늄,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유해물질

과불화산 화합물 및 산업오염 물질

염소산염, 할로아세틱산, 비스페놀A와 같은 소독 부산물 및 불순물

○ 식수의 질과 안전성 향상 위해 레지오넬라 및 염소산염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

○ 수질 개선 및 수질 모니터링을 향상시킴으로써 식수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성을 4%에서 1%미만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

○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생수 소비량 줄일 수 있음. 패트병 물 소비의 감소로 인해 연간 6억 유로 이상을 절약 가능

○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과 2030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도 부합함

○ 유럽 위원회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파이프관 및 물탱크 등의 생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, EU 시장 내 관련 제품 기술표준화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임

– 납과 크롬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

– 아크릴아미드, 비스페놀 A, 에피클로르히드린 고무, 노닐페놀, 염화비닐 등 제한 강화

–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관한 정기적 추가 모니터링

– 기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테스트 절차 비용을 줄여 EU전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

○ 개정된 법안을 통한 투명성 제고로 식수 공급업체는 불필요한 실험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가능,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식수정보와 비용구조정보를 제공. 현재 소비자가 지불하는 식수 부문 연간 비용은 46유로임

2. (인증/허가) 신규식품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

*출처: EFSA 유럽식품안전청 (2018.2.16)

○ 유럽연합위원회는 신규식품에 관한 새로운 규정 (EU) 2015/2283의 발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실행 규정 (EU) 2017/2469 채택. 이는 Regulation (EU) 2015/2283의 제 10조에 언급된 신규식품 적용에 대한 관리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실행하는 규정임

○ 신규식품 관련 허가 신청 및 새로운 지침은 위의 두 규정을 유의하되 법적 조치 조항간 불일치 시 실행 규정 (EU) 2017/2469 을 따름

○ 신규 식품에 포함되어야하는 식품관리, 기술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제시. 식품사업자의 신규식품 등록준비와 제출을 용이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. 신규식품에 관한 안전평가기록, 행정, 기술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명시

○ 신청서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및 등록사항 규정으로 신청 지원자가 신규 식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마련, 준비하는데 도움을 줌

○ 유럽위원회는 온라인 제출 플랫폼을 개발,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지침서 마련

○ 완전성 점검표

*부록 A :

- 신청자가 기술 서류에 위해성평가 및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표 사용. MS Word 같은 일반 워드 프로세싱 형식으로 작성, 제출해야 함
- 각 점검사항에 대해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 제공되지 않을 경우, 해당 데이터 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어야함
- 신청자는 의견란에 추가 의견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
- 서류 상 파란색 기입란은 EFSA가 작성

○ 과학적 데이터를 위한 네 가지(B.1, B.2, B.3, B.4) 표

*부록 B :

- 신청자가 기술 서류에 과학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권장 됨, 공통 서식 준수를 통해 EFSA의 위해성 평가 용이하게 함
- 유럽위원회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연구의 개요 제공, 위해성평가 프로세스를

용이하게 함

– 위해성평가는 전체 기술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함, 부록 B와 다른 형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형식 준수하길 권고

– B.1 : 신규식품기술에 제공된 연구 보고서의 개요 표

연구 보고서 발행제목, 발행년도, 저자명	안전성 및 독성 등에 관한 연구 분야	문서 파일 제목	연구 지침	연구 수행처	승인기관 표시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-

– B.2 : 신규식품의 성분 자료

성분 한도	분석 방법	분석 증명서	분석 수행처	승인기관 표시
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

– B.3 : 독성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찰 요약표

신규식품과 대조군의 유의미한 차이점 요약

관찰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가, 감소의 비율은 각주로 표시되어야 함

– B.4 : 신규식품 또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체 연구 요약표

연구 설계 및 구조, 최고 수준의 과학적 증거 제시해야 함

○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부록 A와 B를 업로드할 것을 권장

○ 신청자는 EU 내,외 상관없이 개인, 식품 사업자, 산업협회, 컨설팅 회사 등 법적기관 및 개인 신청자를 의미

○ 신청자는 EFSA 웹사이트에서 신규 식품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문서의 변경사항 및 평가 최신 버전을 항상 참고하길 권고

3. (인증/검역)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위해성 평가 업데이트

*출처: EFSA (2018.2.28)

○ EFSA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3종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업데이트 함

- 종자처리 시 사용되는 클로티아니딘에 관한 살충제 위험평가
- 이미다클로프리드 종자처리수화제에 관한 위험평가
- 티아메톡삼에 관한 위험평가

○ 유럽위원회가 2013년 해당 물질 사용을 통제하도록 발표한 이후의 업데이트임

- 위원회를 통해 2년 내에 검사 실시

- 해바라기와 옥수수 파종 시 사용 불가
- 파종 시 피프로닐 사용한 곡식 규제
- 온실 파종 허가
- 단, 야외에서 파종될 수 있는 부추, 파, 가랑파, 양파, 양배추류(브로콜리, 꽃양배추 등)는 제외

○ ESFA는 이전의 과학적 지식과 정보 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문헌검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 실시, 또한 살충제 위해성평가를 위한 특별한 지침 개발 계획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품목명) 일반사항

- 없음

2. HS code, 관세

- 없음

3.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

- 없음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- 없음

